濟州道 開發斗 土地利用政策

夫 萬 根

目 次

- I. 序 論
- Ⅱ. 済州道開発과 土地利用政策과의 関係
- Ⅲ. 土地利用의 実態
- 1. 機能別 土地利用実態
- 2. 土地利用의 規制実態
- IV. 土地利用에 있어서의 問題点
- V. 土地의 機能別 利用展望
- VI。 済州道開発을 위한 合理的인 土地利用政策
 - 1. 土地利用 面積의 拡大
 - 2. 土地利用 規制의 強化
 - 3. 土地利用의 誘導・促進
 - 4. 公有地의 確保
- VI. 結 論

1. 序 論

1950 年代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土地問題는 대체로 農地問題를 의미하였고 그것도 耕者有田의 原則을 어떻게 実現시킬 것이냐에 중점이 두어졌다. 1) 당시의 土地問題가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理由는 이 때 까지만 해도 農業用 이외의 土地에 대해서는 供給不足現象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 年代初부터 各種 開発事業이 추진되고 都市化・産業化 現象이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土地問題는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즉 人口의 都市集中은 住宅地와 그 附属用地의 需要是 급증시켰고 工業発達은 예전보다 몇배나 많은 工場敷地를 要求하게 되었으며 政府의 国民生活에 대한 質的인 관심은 더 많은 公共施設用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需要增大는 한정된 国土內의 土地利用에 있어서 심한 競合現象을 가져와 優良農耕地가 他用途로 잠식됨으로써 農業生産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所有者의 恣意的인 土地利用은 機能을 混在시켜 都市公害 및 産業公害를 야기시키는 原因이 되고 있다. 한편 経済性 위주의 무계획적인 土地開発은 그 過程에서 自然을 파괴시켜 生態系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더욱 問題가 되는 것은 土地가 投機의 対象이 되어 地価가 폭등되고 特定人에 의한 過多占用現象이 나타나 都市地域内의 垈地나 주변의 耕作可能한 土地가 遊休地로 방치된 채 地価가 上昇되기만을 기다리는 状態가 됨으로써 土地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一般市民들은 宅地의 구입이 힘들게 되어 基本生活이 위험을 당하게 되고 企業家들도 工場用地의 매입을 위한 固定資本投資率의 증가로 결국은 製品의 生産費에 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또한 비싼 価格에 의한 公共施設用地의 買入은 그만큼 国民의 租稅負担을 加重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土地問題가 이같이 심작성을 떠어갑에 따라 政府는 이의 타개를 위해 몇해 전 부터 土地市場에 적극 介入하여 地価・所有・利用등 여러가지 側面에서 政策的인 努力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地価品騰을 抑制하기 위해 각종 稅制의 新設과 基準地価등을 고시했으며 土地所有權에 대해서는 公概念까지 導入하는 方案을 模索하고 있다。 또 土地利用의 合理化를 위해서는 用途地域指定開発制限区域設定등의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은 이를 뒷받침해야 할 法的体系가 제대로 整備되지 않은데다 管理手段으로

¹⁾ 崔柄煜,農地의 利用強制制度,農村問題,利 4 引,梨花女大農村問題研究所, 1978, p. 40.

서의 行政体制도 확립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現在의 土地政策은 国土綜合開発計劃의 추진에 効果 的으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現象은 国土計劃의 테두리 안에서 樹立된 圈 域計劃인 済州道観光綜合開発計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済州道観光綜合開発計劃은 合理的인 土地政策을 開発事業을 추진하는데 基本的인 前提로 삼고 있다。 따라서 済州道의 綜合開発은 土地政策이 어느 정도 合理的으로 樹立되느냐의 与否에 成敗가 달려 있다고 불 수 있다.

이러한 観点에서 本論考는 済州道 綜合開発事業을 効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그 手段으로 서 将次 어떠한 土地政策이 필요한지를 주로 利用政策的인 側面에서 考察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따라서 本論考의 論旨展開는 먼저 済州道의 綜合開発과 土地政策과의 関係를 考察하고 土地利

用의 実態의 問題点을 규명한 다음 将来의 土地利用패턴을 機能別로 展望하고, 이를 바탕으로 土地利用의 合理化를 기할 수 있는 政策方向을 제시하였다.

п. 濟州渞開發과 土地利用政策과의 關係

우리나라의 国土綜合開発計劃은 全国土의 均衡的 開発과 農・工業의 併進発展을 이룩하고 国民 経済 能率의 極大化를 위한 여건을 조성,보다 바람직한 基盤을 構築하기 위한 것이다。 이 計劃 은 基本目標을 ① 国土利用 및 管理의 効率化 ② 開発基盤의 拡充 ③ 国土의 包藏資源開発과 自然保全 ④ 国民生活環境의 개선등 네 가지에 두고 있다.²⁾

또 이 計劃은 開発政策으로서 工業基地의 構築整備, 교통·통신의 拡充, 水資源 및 에너지供給 網의 整備, 不振地域開発을 위한 地域機能強化를 強調하고 있고 3) 力点事業의 方向은 地方中小都市의 育成 및 基幹的 社会間接施設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国民経済活動 能率의 極大化의 地域自立度의 조성등 均衡있는 発展에 두어지고 있다。

国土綜合開発計劃에서는 地域別로 조화된 国土空間秩序을 確立하기 위하여 全国을 8個中國으로 区分하고 있는데 済州地域이 바로 그 中國의 하나이며, 國域別로 開発의 基本構想을 策定하고 이에 따른 地域開発計劃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済州道観光 綜合開発計劃이다。

따라서 済州道観光綜合開発計劃은 国土綜合開発計劃의 基本目標。開発政策,力点事業의 테두리 안에서 済州道의 特性과 与件을 고려하여 樹立된 것으로서 観光을 地域開発을 위한 主軸産業으로 하고 餘他産業을 여기에 연관시켜 장기적인 眼目에서 機能別 開発秩序를 確立시키려는 計劃이

²⁾ 大韓民国政府,国土綜合開発計劃(1972-1981), 1972, pp.8-9.

³⁾ 大韓民国政府, 前掲書, p.9.

th. 4)

- 이 計劃은 開発의 基本方向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設定하고 있다.
- ① 国際水準의 観光地造成: 済州道가 지난 地理的인 여전과 観光資源을 최대로 活用하고 観光 客들에게 충분한 慰楽과 休息을 줄 수 있는 国際的水準의 観光団地를 조성한다.
- ② 拠点開発로 波及効果 提高: 観光 및 経済的 立地条件이 좋은 拠点을 선정, 한정된 財源의 重点投資의 拠点別 完決主義로 経済의 適正効果 및 他産業에의 波及効果을 높이다.
- ③ 綜合的인 테두리에서의 段階的開発: 地域開発의 基本的方向을 토대로 開発事業을 推進하되 앞으로의 社会 및 経済的인 与件変動에 弾力性있게 대처하면서 優先順位에 따라 단계적으로 開発 하여 점차 済州道의 開発像이 실천되도록 한다. 5)

이러한 開発計劃의 推進은 合理的인 土地政策의 樹立을 그 前提로 하고 있다。 따라서 開発事業의 効率的인 推進을 위해서는 自然 및 社会·経済的 여건을 고려한 済州道의 地域実情에 알맞는 土地政策이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済州道観光綜合開発計劃은 이외같은 土地政策으로서 土地利用基本計劃을 樹立하여 開発과 保全의 調和를 기하고 必要한 곳에는 基準地価를 告示하도록 하고 있다.⁶⁾

즉 土地利用計劃의 樹立으로 個人所有의 土地를 国民全体의 福祉를 위하여 用途에 適合하게 使用한 것을 義務化하는 한편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는 이 計劃에 따라서 公共投資를 重点的이며 計劃的으로 整備함으로써 土地利用을 円滑히 誘導한 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開発豫定地 등에 대해서는 基準地価를 告示하여 地価의 昇騰을 抑制하고 公共機関이 当該 土地를 買入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補償価의 基準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資本主義社会가 商品社会이고 土地도 商品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土地는 다른 商品에 비해서 현저한 特殊性을 가지고 있다。

土地는 恒久性을 갖기 때문에 立地条件을 変動시킬 수 없으며 아무리 資本과 労動力을 投下하더라도 再生産이 不可能한 有限性을 갖고 있어 土地所有는 地表에 대한 独占으로서의 排他的 性格을 띠고 있다。 또한 土地에 따라 物理的、化学的 性質이 다르며 地理的 条件이 相異한 까닭에다른 것으로의 代替가 不可能하다。

더우기 土地는 人間生活에 不可欠의 経済的 要素로서 各種 生活資料를 제공해 주는 원천이며 空間的으로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特定土地를 어떠한 用途에 利用하였을 경우 이에 接続된 土地는 반드시 影響을 받게 되므로 土地利用은 独立해서 存在할 수 없다는 性格을 가지고 있다.?)

⁴⁾ 青瓦臺観光開発計劃団。 済州観光綜合開発計劃。 1973, p.7。

⁵⁾ 青瓦臺観光開発計劃団, 前掲書, p.8.

⁶⁾ 青瓦臺観光開発計劃団,前掲書, p.116.

⁷⁾ 徐元宇, 土地에 대한 公法的規制, 公法의 諸問題, 海厳文鴻柱博士華甲紀念論文刊行委員会, 1978, p.727 参照。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土地는 個人的 所有의 対象物임과 동시에 人類共存을 위한 生活権的 保障手段으로서의 物権的 性格도 가지므로 ⁸⁾ 한 国家나 한 地域의 土地는 그 国家나 그 地域의 経済財貨이며 福祉向上을 위한 手段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土地資源을 어떻게 이용하며 管理하느냐에 따라 福祉의 向上과 開発에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済州道의 綜合開発을 効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土地政策의 内容은 観光 綜合開発計劃에서 제시하고 있는 用途地域指定이나 基準地価 告示制度만으로는 未治하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本質的인 문제들을 考慮한후 세워진 것이라야 할 것이다。

첫째, 産業과 都市의 급속적인 발달과정에서 必然的으로 要求되는 住宅 및 工業用地, 公共施設 用地등 새로운 土地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 土地供給의 体系를 어떻게 樹立할 것인가 하는 점이 다.

둘째,無秩序한 土地利用에서 오는 混乱과 不合理, 그리고 複雜하게 対立되어 있는 土地所有者 들의 利害関係를 어떻게 規制하고 調整하여 地域内의 종합적이며 均衡있는 空間秩序를 確立할 것 인가 하는 점이다。

셋째, 農耕地나 緑地등을 어떻게 有效適切하게 利用하고 保全함으로써 상호간에 調和를 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넷째, 장기적인 眼目에서 土地問題를 根源的으로 해결하기 위해 土地를 어떻게 積極的이며 計劃的으로 開発하고 高度利用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土地利用政策의 내용이 이상의 問題들을 計劃的으로 整序지을 수 있게 될 때 済州道의 綜合開発은 効率的인 推進이 可能할 것으로 믿어진다.

Ⅲ. 土地利用의 實態

1。機能別 土地利用實態

済州道의 総面積은 현재 1,824.68 ㎢로 1966年의 1,819.57 ㎢보다 5.11 ㎢가 불어났다. 機能에 따른 土地의 利用実態는 住居地가 3.16 ㎢ (1.7%), 農耕地는 490.41 ㎢ (26.8%)이고 林野는 1,138.29 ㎢ (62.4%), 其他가 164.38 ㎢ (9.1%)로 林野가 압도적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表 1 参照〉

이를 全国比率인 住居地 2.3%, 農耕地 22.4%, 林野 64.8%, 其他 10.7% *) 와 비교해 보

⁸⁾ 相場洋一, 生産縁地法についヅユリスト, 国土利用計劃法と 土地問題, 有嬖閣, 1974, p.89,

⁹⁾ 韓国開発研究院,長期経済社会発展(1977-1991), 1977, p.150.

면 済州道는 農耕地의 比率은 비교적 높으나 다른 機能으로의 利用比率은 낮은 편이다.

〈表1〉 土地의 機能別 面積 増減趨勢

다위: 🜬

区分	総面積	農	耕	地			<u>단위·kar</u>
年度	*** A *()A	計 田		沓	住居地	林野	其 他
1966	1,819,57	491.47	480.94	10.63	25.63	1,189,47	112.85
1972	1,819.91	505.94	495.91	10.03	31.57	1,170,17	112.23
1978	1,824.68	490.41	480.82	9.59	31.60	1,138.29	164.38

※ 資料: 済州道

1) 住居地: 住居地로 利用되고 있는 토지는 31.60 km로 1966 年의 25.63 km보다 23 %인 5.97 km가 증가됐다. 이러한 사실은 人口增加에 따른 宅地需要의 拡大를 反証해 주고 있으나 이 期間동안 済州道의 人口는 336,694 명에서 443,708 명으로 32 %가 增加되었는데도 住居地의 拡大比率은 이를 따르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済州道에서 都市化現象이 가장 두드러진 済州市의 경우는 이 기간동안 人口는 87,566 명에서 152,486 명으로 73%가 증가했는데 비해 住居地는 7.87 년로 무려 87%가 불어나 人口增加率을 앞지르고 있다. 이는 新済州의 건설, 土地区劃整理등 각종 公共建設事業과 民間事業에 의해 많은 面積의 農耕地등이 垈地로 転換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2) 農耕地: 현재의 농경지 면적은 490.41 km²로 1966 년의 491.47 km²보다 1.30 km²가 줄어들었는데 地目別 減少面積은 畓이 1.04 km², 田은 0.12 km²이다. 畓이 줄어든 것은 水利不完全畓이 田으로 転換되었거나 垈地로 転用되었기 때문이며, 그동안 中山間開発을 통해 많은 農耕地를 조성했는데도 田이 감소현상을 보인 것은 개간면적보다 더 많은 農耕地가 住宅이나 工場用地 또는 道路등 公共施設用地로 잠식되었기 때문이다.

농경지의 地目別 構成比量 보면 畓이 1.95%로 모두가 해발 100 m이하의 海岸地域에 집중되고 있는데 비해 田은 98.05%를 차지하여 全国에서 가장 比率이 높다. 田은 済州道의 橢円状 土地 利用景観중에서 200 m이하의 海岸地域에 90%이상이 연축적인 分布를 보이고 있으나 10) 地質的条件에 의한 土薄性과 乏水性으로 単位面積에 대한 生産高는 낮은 편이다。

耕種様式別 農耕地 利用状況은 1966年에는 一般作物 栽培面積이 484.93 km²(98.5%),果樹栽培面積은 6.64 km²(1.5%)였으나 1978년에는 일반작물은 396.52 km²(75.3%), 과수는 120.

¹⁰⁾ 吳洪智, 済州道 土地利用状態斗 未来, 제주도, 通巻第62号, p.82。

89 km (24.7%)로 나타나 일반작물 재배면적은 계속 값소되고 있으나 과수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農家別 농경지의 所有規模는 平均 0.97 ha에 불과하며 農家 50,781 세대중 1 ha 未満을 소유하고 있는 農家가 34,343 세대 (68%), 1~3 ha는 15,865 세대 (31%), 3 ha 이상은 493 세대 (1%)로 나타나고 있다。

3) 林野: 林野面積은 1,138.29 km로 1966 년의 1,189.47 km보다 51.18 km가 줄어 들었다. 이는 개간에 의한 未林木地의 農耕地로의 転用, 漢拏山 第2横断路등 中山間道路의 敷地, 기타 公共施設用地로 林野가 잠식된 때문이다.

林相別로는 林木地가 632.33 km²(55.5%), 未林木地는 505.96 km²(44.5%)인데 林木地의 구성은 침엽수림 46%, 활엽수림 31.3%, 침엽・활엽혼유림 22.7%이며 未林木地는 牧野 91%. 其他 9%로 되어있다。

林木地는 주로 해발 600 m이상의 高度에 위치하고 있으나 未林木地는 해발 200 ~ 600 m에 橢 円状으로 分布되어 下限의 농경지와 上限의 林木地의 漸移地帯률 이루고 있다.

4) 其他: 住居地,農耕地,林野 以外의 用途로 이용되고 있는 土地의 총면적은 164.38 ㎢ 로 1966 년의 112.97 ㎢보다 45%가 증가되었다. 이 가운데는 상당면적의 不毛地도 包含되어 있기는 하나 이같은 絶対面積의 增加現象은 都市化 및 산업발전에 따르는 道路, 저수지, 댐등 公共시설용지의 拡大에 기인하는 것이다.

2. 土地利用의 規制實態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土地関係法規는 50餘가지나 되며 이중 토지이용 規制에 관한 直接的인 規定을 두고 있는 것 만도 20여가지에 이르고 있다. 이들 法規章은 ① 国土政策法規② 農地政策法規③ 宅地政策法規④ 其他法規등 크게 네가지 類型으로 区分할 수가 있다.11)

類型別로 대표적인 法责备 살펴보면 国土政策法規로는 国土建設綜合計劃法,国土利用管理法,公園法,文化財保護法备,農地政策法規로는 農地의 保全및 利用에 관한 法律。山林開発法,農地拡大開発促進法등 备 音 수 있다。 한편 宅地政策法規로는 都市計劃法,土地区劃整理事業法,土地収用法 등이 있고 其他法規로는 建築法,公害防止法,埋葬 및 墓地등에 관한 法律 등 备 등 수 있다。

이러한 法規章은 済州道內의 토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土地利用에 대해 각종 規制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代表的인 規制樣態는 国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制 및 基準地価制。農

¹¹⁾ 金永澈·閱載祚,国土開発号 위한 土地所有權法理에 관한 研究,文教部学術研究報告書(社会科学系) 3, 1972, pp.6-7参照。

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에 의한 絶対農地制, 都市計劃法에 의한 開発制限区域制가 될 것같다.

1) 用途地域制의 施行

済州道 全域의 토지는 国土利用管理法에 따라 用途地域과 用途地区가 지정되어 土地所有者는 그 土地를 指定目的에 적합하게 이용해야 하는 公法上의 規制를 받고 있다.

用途地域은 国土利用管理法上의 토지이용기본제획에 따라 1975년에 指定됐는데 土地를 効率的이며 計劃的으로 利用・管理하기 위하여 그 機能과 適性에 따라 일정한 地域으로 区分한 것이다. 指定内容은 都市地域이 339.01 編로 済州道 全面積의 18%, 農業地域은 414.06 編로 24%,山林地域은 1065.0 編로 58%이고〈表 2 参照〉 他地域에 중복된 自然 및 文化財保全地域은 268.50 編이다. 그러나 工業地域은 用途地域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

한편 用途地区는 国土利用管理法上의 土地利用施行計劃에 따라 1979년에 指定된 것으로 用途地域을 보다 効率的으로 利用·管理하기 위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다시 区分한 것이다. 指定內容은 済州道 全域중 都市地域을 除外한 1480.56 ㎢을 대상으로 農業地域은 耕地地区 및 聚落地区로,山

〈表 2 〉 土地利用基本計劃에 의한 用途地域

단위:🖼

×		4	}	総面積	用	途	地	域		
	<u> </u>	<i>),</i>		**C AL 194	都市地域	農業	農業地域		山林地域	
総	:	1	H	1819.57	339.01	41-	4.06	1066.	50	
済	• •	H ī	Ħ	252.18	115.99	2	5.97	110.	22	
	小		計	703.88	81.69	183	2.52	439.0	_	
北	輸	林	邑	85.89	32.90	19	9.71	33.	28	
済	輸	京	面	83.22	10.89	31	7.38	34.9	95	
.	涯	月	面	190.81	10.65	52	2.42	127.7	74	
₩.	朝	天	面	151 .47	10.42	21	.64	119.4	41	
ek	旧	左	面	185.78	16.83	49	21	119.7	74	
	楸	子	面	6.71	_	2	2.16	4.5	55	
	小		計	863.51	141.33	205	.57	516.6	51	
南	西	帰	邑	108.42	49.19	5	.37	53.8	36	
斉	大	静	邑	176.88	24.21	36	.58	116.0	9	
	安	徳	面	105.01	6.25	29	.55	69.2	21	
H	中	文	面	144.10	21.25	27	.51	95.3	34	
B B	南	元	面	187.57	9.79	35	.00	142.7	78	
	表	善	面	134.78	4.83	42	.49	87.4	6	
- 1	絾	山	面	106.75	25.81	29	.07	51.8		

※ 資料: 済州道

林地域은 山林保全地区 및 開墾促進地区로 自然 및 文化財保全地域은 自然環境 保全地区 • 文化財保全地区 • 観光休養地区로 세분하고 있다 • 〈表 3 参照〉

〈表3〉 土地利用 施行計劃에 의한 用途地区

단위 : 🖼

-			農	業 地	域	Щ	林地	域	自然	3 및 文化	上財 保全	地域
D	3 分	総面積	2 H	耕地	聚 慈	#+	山保地	開促地	計	自然環境保全	文化財 保 全 地 区	観休遊区
				地区	地区		地区	地区		地区	地区	地区
¥	e #f	1480.56	414.06	394.80	192.63	1066.50	547.54	518.96	268.50	163.98	95.43	9.08
ð	州市	136.19	25.97	25.13	0.84	110.22	77.62	32.60	90.90	61.93	23.70	5.27
	小 計	622.19	182.52	172.79	9.73	439.67	194.11	245.56	54.00	30.01	23.26	0.73
北	翰林邑	52.99	19.71	18.79	0.92	33.28	22.24	11.04	-	-	-	-
済	輪京面	72.33	37.38	36.02	1.36	34.95	22.98	11.97	0.48	-	-	0.48
•	涯月面	180.16	52.42	49.08	3.34	127.74	67.82	59.92	29.12	19.60	9.37	0.15
Ħ	朝天面	141.05	21 .64	20.98	0.66	119.41	57.68	61.73	22.78	10.41	12.27	0.10
郡	旧左面	168.95	49.21	46.86	2.35	119.74	18.87	100.87	1.62	-	1.62	-
	猴子面	6.71	2.15	1.06	1.09	4.55	4.52	0.03	-	-	-	-
	小計	722.18	205.57	196.88	8.69	516.61	275.81	240.80	123.49	72.04	48.37	3.08
南	西帰邑	108.42	5.37	5.37	-	53.86	40.08	13.78	33.09	18.24	14.85	-
	大静邑	176.88	36.58	34.89	1.69	16.09	9.63	6.46	-	-	-	-
済	安德面	105.01	29.55	28.18	1.37	69.21	21.99	47,22	0.84	-	0.40	0.44
Ж	中文面	144.10	27.51	26.23	1.28	95.34	58.93	36.41	29.36	21.25	1	2.00
郡	南元面	187.57	35.00	33.18	1.81	142.78	122.62	20.16	60.20	32.55	27.01	0.64
	表善面	134.78	42.49	41.31	1.17	87.46	19.49	6797	-	-	-	-
	城山面	106.75	29.07	27.71	1.36	51.87	3.07	48.80			-	<u> </u>

※ 資料: 済州道

- ① 用途地区의 충면적에는 都市地域面積 339 년는 包含되지 않았음。
- ② 自然 및 文化財保全地域의 用途地区는 餘他地域의 用途地区의 중복된 것임。

用途地域 및 用途地区가 지정된 토지는 그 이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規制를 받고 있다.

(1) 用途地域 안에서의 行為制限 12) : 都市地域에서는 都市計劃이 시행될 때 까지는 都市計

¹²⁾ 国土利用管理法 第15条 参照。

劃法의 規定이 적용되며 農業地域에서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規制된다。 한편 山林地域은 山林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用途地区 안에서의 行為制限 ¹³⁾: 농업지역의 聚落地区에서는 公害의 危険이 있는 工場,油類 및 火薬類저장소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이나 建築物등은 설치하지 못한다.다만 指定目的에 현저히 위배되지 아니한 것은 道知事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山林地域의 開墾促進地区안에서 大統令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住宅用地 및 工業用地 造成事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道知事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自然環境 保全地区 안에서의 行為 制限은 公園法 第16条의 규정을, 文化財 保全地区에서는 都市計劃法 第19条 第3項 第1号의 규정을, 観光休養地区 안에서는 観光事業法 第46条 第6項 및 第48条의 規定이 각각 準用된다。

2) 絶対農地의 指定

絶対農地는 農地의 転用을 적절히 規制하여 優良農地의 保全을 도모하기 위해 農地의 保全및 利用에 관한 法律에 따라 農水産部長官이 指定告示한 농지로서 그 대상은 주로 ① 公共投資에 의하여 조성된 農地, ② 農業基盤이 정비된 농지, ③ 集団化된 농지가 되고 있다.

1976 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済州道内 絶対農地의 면적은 현재 20,468 筆地에 5,524 ha 로全体 농경지의 11.2 %에 이르고 있다. 〈表 4 参照〉 이중 畓은 6,514 筆地 950.9 ha로 전체

〈表 4 〉 絶対農地 指定告示状況

(1979.12.31. 現在)

			栬	対 農	地
	区分	分農地総面積	筆 数	面積	総面積에 대한 比 率
	小 計	1,062.6	6,514	950.9	90 %
本	済 州 市	75	248	35.9	48 %
_	北済州郡	343.4	1,828	287.6	84 %
	南済州郡	644.2	4,438	627.4	97 %
	小 計	484,364	13,954	4,573.1	9.5 %
	済 州 市	5,474.5	887	305.9	5.6 %
田	北済州郡	20,053.5	4,625	1,496.2	7.5 %
	南済州郡	22,908.4	8,442	2,771	12.1 %
	#	49,499	20,468	5,524	11.2 %

※ 資料: 済州道

¹³⁾ 国土利用管理法 第16条 参照。

쯤의 90%에 이르고 있으며 田은 13,954筆地 4,573 ha로 전체 田面積의 9.5%이다.

일단 絶対農地로 指定되면 形質을 変更하거나 農地의 이용에 障害가 되는 施設 또는 構造物의 設置을 할 수 없으며 농지를 農作物 耕作,多年性植物이나,牧草 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原則的으로 禁止되며 他用途로 転用이 不可避할 때는 農水産部長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転用이 취가된 후에라도 許可의 目的 또는 条件에 위배된 경우에는 許可를 취소하거나 変更시키는 등 ¹⁴⁾ 土地所有者의 利用権에 制限이 가해지고 있다.

3) 基準地価의 告示

基準地価制는 원래 土地収用에 따르는 補償費의 절감과 公共事業으로 인한 土地所有者의 不労所得을 抑止할 목적에서 土地収用法에 도입되어 国家와 地方自治団体가 起業者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¹⁵⁾

그러나 이 制度가 国土利用管理法에도 도입됨으로써 특정한 公益事業의 시행과 관련없이 地価의 부당한 変動을 抑制하고 土地利用計劃의 원만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地価가 현저히 変動될 우려가 있는 地域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⁶⁾

済州道에서의 基準地価는 1973年7月 済州市 일부지구,萬丈韬地区등 6個 地区에 최초로 告示되었는데 観光開発 豫定地로서 基準地価가 告示된 곳은 현재 10개 地区에 충면적 185.12 년 로 済州道全体 面積의 10%에 이르고 있다. 〈表5参照〉

〈表 5 〉 済州道内 基準地価 告示地域

(1979.12.31.현재)

다위 : 🖼

			<u> </u>
告示日	地区名	位	面積
1973. 7. 20	돈내코地区	西帰邑 法護川 中心 幅 1㎞,長 9.5㎞	24,47
	西海地区	西帰邑 正房瀑布中心 半経 2.5 ㎞	9.80
	中文 - 西帰地区	中文 - 西帰間 海岸線基準 幅 0.5, 長 10 km	7.30
•	狭才地区	翰林邑 狭才里中心 半経 4 km	2.11
,	済州市地区	三姓穴中心 半経 2.5 ㎞	24.09
,	萬丈翁地区	萬丈窟 進入路中心 幅 1 km, 長 7.1 km	6.20
1974. 3. 29	蓮 洞 地 区	済州市 蓮洞 도호리中心 半経 1.5㎞	7.32
,	中文地区	中文海水浴場 中心 半経 4 km	35.00
1974. 5. 31	城山地区	城山面 城山水高 中心 半経 4 km	31.30
,	朝天地区	朝天面 威德国民学校 中心 半経 4 km	37.53
計	10個地区	No. of the contract of the 1 cm.	185.12

※資料: 済州道

¹⁴⁾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6条。

¹⁵⁾ 土地収用法 第16条의2 参照。

¹⁶⁾ 国土利用管理法 第29条 参照。

한편 1979年 12月에는 建設部가 済州市를 包含한 全国 36個 都市에 대한 都市計劃 区域内의 基準地価를 일괄해서 告示했다。 그중 済州市의 경우는 ¹⁷⁾. 地目別 坪当 平均基準価가 田은 11, 730원, 垈地가 333,041원, 林野는 1,820원으로 되어 있다. 이를 全国의 他都市와 비교해 보 면 田은 17번째, 林野는 19번째이나 垈地의 경우는 서울, 釜山, 麗水 다음인 5번째로 높다.

한편 用途地域別 坪当 最高基準地価는 商業地域이 3백만원,住居地域은 80만원,그리고 工業地域은 44만원으로 되어있다。 이를 他都市와 比較해 보면 商業地域은 12번째이나 住居地域은 서울, 麗水 다음인 3번째이고 工業地域은 馬山市 다음이 全国에서 두번째로 높다。

이 基準地価는 建設部가 1978年8월 21일 현재 조사한 去来価格을 중심으로 告示한 것인데 위의 비교에서 보는 바와같이 済州市가 地目別로나 用途地域別로나 他都市에 비해 비교적 높게 策定된 것은 実際의 去来価格이 그만큼 비싸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재 済州道內에 告示된 基準地価는 아직은 国土利用管理法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一般 土地去来 행위에 있어서의 価格의 指標는 되지 못하고 있으나 公共施設用地의 買入을 위한 土地収用의 경우에는 그 地価 또는 補償額의 基準으로 크게 活用되고 있다。

4) 開発制限区域의 設定

済州都市開発制限区域은 1973年5月 建設部告示 第88号로 설정되었는데 면적은 82.6 km 이고 地域範囲는 済州市 주백과 朝天面 일부에 까지 이르고 있다.

開発制限区域의 지정목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都市의 生活環境을 마련하여 도시지역의 오염된 공기의 여과대를 설치하고 国民情緒의 醇化를 위한 景観을 보전하는 동시에 都市의 無計劃的인 外延的拡大를 방지하기 위한 空間的인 限界線을 劃定하기 위한 것이다. 18)

이러한 区域안에서는 指定目的에 위배되는 토지의 形質変更, 建築物이나 工作物의 설치등이 厳格히 통제되고 있어 住民들의 토지이용을 가장 심하게 規制하고 있는 조치가 되고 있다.

Ⅳ. 土地利用에 있어서의 問題点

済州道内의 土地利用実態에 따른 現実的인 問題点으로는 크게 土地의 잘못 利用,特定人에 의한 過多占用, 墳墓에 의한 農耕地 잠식, 環境의 悪化등 네가지를 들 수 있다.

1. 土地의 誤用

¹⁷⁾ 現代経済日報, 1979年12月14日字第5面、第7面参照、

¹⁸⁾ 劉甲寿,固土開発論,建設研究社, 1976, p.148.

土地利用의 合理化라는 側面에서 불 때 問題点의 主宗을 이루는 것은 토지를 잘못 利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주로 優良農耕地가 住宅이나 工場用地등 他用途에로 잠식되는 데서 연유되고 있다.

優良農耕地가 他用途로 転用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불 수 있는 현상으로서 都市 化의 経済発展에 따라 격증하는 住宅 및 工業用地의 確保를 위해서는 不可避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食糧自給을 위해 한 치의 農耕地라도 保全해야 한다는 観点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결코 못된다。 더욱 問題가 되는 것은 住宅 및 工場建設을 위해 転用된 農耕地가 与件変動이나 需要豫測이 빗나가 整地된 状態에서 活用되지 않고 長期間 방치해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都市地域에서 土地가 잘못 이용되고 있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으로 불때 済 州道内 都市地域의 土地利用패턴이 計劃的이라기 보다는 自然発生的이라는 데 있다。

済州道内에서 都市計劃의 決定告示는 1952년에 済州市가 그 효시를 이루었고 西帰邑(1965年)翰林邑(1966年),大静邑(1966年)이 뒤따랐다。 이같이 都市計劃의 역사가 日浅한데다 都市計劃이 決定告示되기 이전에는 이들 地域의 土地利用에 대해 이렇다할 規制가 없었기 때문에 住宅이나 工場들이 農耕地안에 무질서하게 들어서서 이를 잠식했다。 또 都市計劃이 樹立된 以後에도 土地利用規制는 都市計劃法上의 用途地域制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基本計劃的 性格을 띤 用途別地域의 概略的 配分으로 만족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用途地域制의 적용과정에서 局地的 詳細性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用途의 定義에 대해서 유연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土地利用計劃이 있으나마나한 結果를 가져왔다。

이에 덧붙여 伝統的 都市計劃의 2大規制対象인 土地利用과 街路를 놓고 볼 때 街路는 法執行 上의 厳格性을 가졌지만 土地利用에 관해서는 法適用에 弛緩性을 가지고 運用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러한 현상이 用途地域을 무시한 土地利用이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土地의 誤用을 심화시키 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토지의 誤用을 야기시킨 두번째의 原因은 都市計劃樹立 당시 計劃区域을 과도하게 策定한데서 찾음 수 있다.

중건의 都市計劃을 보면 計劃面積이 済州市는 124.06 ㎢, 西帰邑은 49.19 ㎢, 大静邑은 58.68 ㎢, 翰林邑은 57.11 ㎢로 行政区域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済州市 49%, 西帰邑 45%, 翰林邑 66%, 大静邑 33%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計劃上의 過欲現象은 集団農耕地는 勿論 都市化의 潜在力이 貧弱한 中山間에 까지 都市計劃区域을 拡大시킨 結果를 가져오게 했다.

이같이 중전의 都市計劃에서는 広大한 地域範囲에 결친 計劃区域의 劃定과 平坦地 優先主義에서 농경지에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을 策定했다。 이런 用途地域에서는 原則的으로 그 用途에 위

¹⁹⁾ 崔相哲,都市土地利用의 目的別 需要強調斗 計劃基準設定에 관한 研究。環境論表。第2巻 第1号 、 州舎大環境大学院 、1975、p.54。

배되지 아니한 建物은 建築할 수 있기 때문에 農耕地의 중심부에 点的으로 住宅이나 건물이 立地 하게 되어 ²⁰⁾ 優良農耕地를 잠식하고 각종 公害를 유발시켜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등 토지이용이 잘못 되게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過欲의 소산인 都市計劃区域은 이의 不合理性을 인정한 政府의 「農地保全을 위한 都市 計劃整備方針」에 따라 1975년~ 1977년 사이에 재조정 되었다.

이 결과 위의 4개지역의 計劃区域 総面積은 중전의 289.04 編에서 20%이상이 감소된 225. 28 編로 되었는데 地域別로는 西帰邑만이 중전대로 이고 済州市는 118.98 編로, 翰林邑은 32.90 編로, 大静邑은 24.21 編로 각각 縮기되었다.

한편 위의 4개지역의 市街化区域의 総面積도 중전의 48.29 kml에서 절반이상이 縮小된 22.34 kml로 재조정됨으로써 환원된 25.95 kml가 농경지로 保全할 수 있게 되었는데 地域別 조정내용은 済州市가 22.28 kml→9.66 kml로, 西帰邑이 8.02 kml→7.33 kml로, 翰林邑은 13.18 kml→2.70 kml로,大静邑은 4.81 kml→2.65 kml로 되었다. 〈表 6 参照〉

〈表6〉 済州道内 都市計劃区域 変更内容

당위 : 🖼

	計劃人口	当初計劃区域			変更	.	劃区	域	
都市別	(1986年)	**\ == 20 *	市街化	***	市街化	農業	斯地 面	穳	其 他
		総面積	計劃面積	総面積	計劃面積	ž†	絶対農地	相対農地	
済州市	200,000	124.06	22.28	118.98	9,66	79.89	-	79.89	29.43
輸林邑	28,000	57.11	13.18	32.90	2.70	22 .93	1.15	21.78	7,27
西帰邑	100,000	49.19	8.02	49.19	7.33	35.09	-	35.09	6.77
大静邑	23,000	58.68	4.81	24.21	2.65	17.21	-	17.21	4.35
計	351,000	289.04	48.29	225.28	22.34	155.12	1.15	153.97	47.82

※ 資料: 済州道

그러나 再關整된 都市計劃区域 안에도 총 153.97 넓의 농경지가 남아 있는데 이는 計劃区域 총 면적의 68%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아직도 적지 않은 問題点이 內在하고 있다。

비록 이들 農耕地의 거의 대부분이 緑地地域内에 存在하긴 하지만 物理的 都市化에 훨씬 앞서

²⁰⁾ 劉永輝,土地利用의 実態의 対策,国土開発過程에서 派生되는 地域問題의 実態의 ユ 対策。韓国地理学研究所 主催 学術も至れる主題論文。 1976年12月, p. 49。

서 農業生産의 道具에서 地価上昇에 의한 不労所得을 期待하는 投機道具로 탈바꿈해 짐으로써 利用形態가 粗放化 내지는 遊休化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경지 잠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이용의 方向은 都市計劃과 食糧自給計劃 雙方에 아무런 이로움이 없을 뿐더러 매우 有害한 要素를 內包하고 있다. ²¹⁾

2. 特定人에 의한 過多占用

1960 年代 초반부터 시작된 開発부음을 타고 済州道의 土地는 特定人에 의한 過多占用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個人은 個人대로,企業은 또 企業대로 都市近郊에서는 工場新築의 名目으로 土地를 買入했고 中山間에서는 牧場을 건설한다는 口実로 많은 土地를 사들였다.

그러나 이렇게 個人의 過多占用한 土地는 현재 거의가 遊休状態로 방치된 채 地価上昇만을 기다리는 실정이며 企業이 占用한 土地도 일부만이 工場敷地나 牧場으로 活用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投機의 対象이 되고 있다.

이같은 投機現象 및 遊休化는 済州道内 土地의 価格을 昻騰시키는 直接的인 要因이 되고 있는데 첫率的인 土地利用面에서도 逆機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特定人에 외한 土地의 過多占用이可能한 것은 法体系의 未備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즉 農耕地는 所有上限線이 3 ha 로 制限되고 있다고는 하나 가족이나 친척의 명의로 買入함으로써 法網을 교묘하게 빠져나올 수 있으며 林野나 垈地등은 所有上限線조차 없으므로 얼마든지 買入이 可能하기 때문이다.22)

〈表7〉 法人所有土地现况

(1978.12.31.현재) 단위 : ha

Z ————————————————————————————————————	分	B†	業務用土地	非業務用土地
垈	地	45.16	15.62	29.54
農業	地	86.98	-	86.98
林	野	4,376.84	1,315.80	3,061.04
其	他	2.34	-	2.34
総	81	4,511.32	1,331,42	3,179.90

※ 資料: 済州道

현재 法人이 占用하고 있는 済州道内의 토지는 총 4,511 ha 로〈表7参照〉 済州道 総面積의

²¹⁾ 康炳基, 土地利用의 現況과 問題, 都市問題, 韓国地方行政共済会, 1976年 8月号, pp.13-14。

²²⁾ 劉永輝, 前揭論文, p.54.

2.4%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活用되고 있는 것은 29%인 1,331 ha에 불과하고 71%인 3,179 ha는 非業務用으로 방치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 統計는 法人所有만의 경우이고 個人이 過多占用한 토지까지 합친다면 中山間의 경우만 해도 1만 ha 를 넘고 있다。

済州道가 1979 年初에 해발 200~800 m에 소재한 81,154 ha 를 대상으로 조사한 土地所有実態을 보면 30 ha 이상을 소유한 者가 民間人은 158 명인데 그들의 소유충면적은 무려 15,976 ha 에 이르고 있다. 〈表8参照〉.

〈表8〉 規模別 中山間 土地所有状況

(1978.12.31. 현재) 단위 : ha

区分		3 ha	未満		3	3 ~ 30 ha			30 ha 以上			
	人員	総面積	既開発	未開発	人員	総面積	既開発	未開発	人員	総面積	既開発	未開発
道内人	44102	28943	12511	16430	1473	10490	3753	6737	106	8602	4146	4456
道外人	328	307	148	159	144	1417	553	864	52	7374	3573	3801
国有	-	-	-	_ !	-	40	3	37	-	6866	4007	2859
市部有		-	-		-	-	-	-	-	9103	3293	5810
部 落 共 用	-	7	3	4	22	400	99	301	61	7605	2832	4773
21	44438	29257	12662	16593	1639	12347	4408	7939	219	39550	17851	21699

※ 資料: 済州道

이중 済州道内 居住者는 106 명으로 平均 84 ha 씩 총 8,602 ha 를 소유하고 있으며 済州道外居住者는 52 명으로 平均 141 ha 씩 총 7,374 ha 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占用하고 있는 토지중 7,719 ha 는 既開発되어 現在 活用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未開発状態에 있어 土地利用의 効率化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3. 墳墓의 豊耕地 置食

済州道는 「墓多의 섬」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墳墓가 많은데 이는 道民意識이 伝統的으로 風 水地理思想이 강한데다 火葬을 기괴하고 있는데서 연유되는 것 같다.

済州道의 墳墓総数는 350,432 基이며 占有하고 있는 土地面積은 2,454 ha 로 道総面積의 1.3 %에 해당하고 있다. 〈表 9 参照〉 이들 墳墓는 거의가 해발 600 m 이하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중 10 萬基가 農耕地에 있어 農地 660 ha 를 잠식함으로써 農業生産増進에 莫大한 支障을 초래하고 있다.

〈表 9 〉 済州道内 墳墓現況

1979.12.31. 現在

区分	墓地	墳墓数	面積 (ha)	偏	考
部落公設墓地	100	56,903	201		
市邑面共設墓地	56	20,251	124		
無縁共同墓地	12	21,286	13		
私設墓地	810	5,974	194		
集団公園墓地	3	1,100	202		
其 他 地 墳墓	-	244,918	1,620	農耕地内:墳墓数	10 萬基,面積 660 ha .
21	981	350,432	2,354		

※ 資料: 済州道

行政当局은 70년대 초반부터 無縁墳墓의 整理, 墓地集団化施策등을 통해 農耕地内 墳墓의 移葬을 추진하고 있으나 法制의 未備와 暗埋葬의 계속, 그리고 연고자들의 비협조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環境의 惡化

1960年代 이후 済州道에도 経済性為主의 開発行為에 따라 土地의 環境悪化現象이 적지 않은 問題点으로 대두되고 있다.

土地環境悪化의 첫째 類型은 経済開発과 都市化에 따른 自然의 破壞現象이다。 経済開発과 都市化는 土地의 구조와 利用形態를 変更시키는 作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変更은 產業施設의 立地, 교통 및 通信網의 拡大, 水路의 整備 및 変化등의 形態로 나타난다。

이것은 能率과 便宜에 초점을 둔 経済性의 提高에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建設工事用 土石의 무분별한 採取와 無計劃的인 開墾으로 自然緑地 및 公園의 破壞。農地의 침식등 自然状態을 破損시키는 原因이 되고 있기도 하다.

自然環境의 破壞는 결과적으로 그것의 復旧내지 保全을 위한 投資費을 증대시키며 食糧自給을 어렵게 하고 위탁공간의 減少로 인한 国民의 精神的, 肉体的 健康을 悪化시키고 있다.

土地環境 悪化의 둘째 類型은 施設의 混在에서 오는 汚染現象이다. 都市近郊에서는 道路나 上。下水道등의 기반시설도 정비되지 않은 채 住宅 및 工場이 무질서하게 세워져 不良住宅地등을 형성했기 때문에 都市環境을 悪化시켜 公共投資을 되풀이 하여도 効率이 提高되지 않을 뿐 아니라 工場과 住宅에서 나오는 廃水로 農耕地가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都心地의 住宅街에도 工場들이 들어서서 廃水는 勿論 騒音,振動,悪臭등 각종의 公害를 유발해 環境을 悪化시키고 있다。

V. 土地의 機能別 利用展望

土地利用의 変化는 制度的·技術的·行態的·計定的인 変数에 의하여 決定되어지므로 토지의 機能別 需要豫測을 正確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変数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必要하다. 23)

一例로 장래의 工業用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工場敷地造成에 대한 政策 및 規制, 생산기술의 革新,生産参与者의 作業空間利用에 대한 行態変化 与否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같이 다양한 変数는 個別的이 아니라 複合的으로 作用하는 데다 変数, 그 자체가 多元的인 性格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土地의 機能別 需要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計量化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本論考에서는 済州道内 토지의 機能別 需要是 計量的이며 具体的으로 豫測하려기 보다는 過去와 現在의 土地利用을 바탕으로 将来의 機能別 変化方向을 展望하는데 그쳤다. 土地利用政策의 수립에는 이러한 利用展望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土地利用 패턴은 주로 세가지 観点에서 変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展望되는데 ²⁴⁾ 첫째는 人口가 增加하고 産業이 발전함에 따라 土地의 量的需要가 급격히 중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人口의 增加는 그만큼 새로운 宅地의 조성을 필요로 하며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라 사람들은 더 넓은 住居空間 및 위략공간을 원할 것이다. 한편 工業化現象은 새로운 工場用地의 需要는 물론 既存工場들도 副次的인 필요에 따라 보다 土地租放的 확장을 하려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또한 公共施設用地도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既存土地의 高度利用과 더불어 低生産的 土地利用이 高生産的 利用으로 점차 転換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競争的需要를 지닌 土地에 대한 여러 用途間에 競合現象이 심화될 것이고 地価上昇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토지가 갖는 고유한 特性인 不增性,供給의 非彈力性,非代替性 때문에 住宅建設에 있어서 宅地買入費의 부담이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住宅의 供給価格 引上과 工業用地의 高価로 固定資本投資率의 증가로 製品生産費의 上昇을 誘導하게 될 것이고 政府의 公共事業에 있어서 用地買入費의 加重은 국민의 租稅負担을 불가피하게 증가시킬 것이다.

²³⁾ 崔相哲,国土의 目的別 需要強測과 国土開発政策의 方向,地域開発研究,第7卷 第1号,全南大地域開発研究所,1976、p.2。

²⁴⁾ 趙東奎·北蘇論的 接近方法에 의한 国土統合開発計劃樹立에 관한 研究, 제 8 집,慶熙大国土統合開発研究所, 1979, p. 11 参照 。 崔相哲,前楊論文, p. 4 参照。

이러한 変化方向을 토대로 **할 때 将来**에 있어서 済州道 土地의 機能別 利用패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変化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다。

1) 市街地

市街地의 土地利用活動은 技術革新이나 生活様式의 変化에 따라 가장 敏感하게 反応하기 때문에 장차 가장 급격하게 変化하는 부문이 될 것이 틀림없다。

経済活動의 확대 및 多様化로 既存産業의 活動을 위한 土地需要가 당연히 增加될 것이고 새로운 種類의 需要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人口增加와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住宅。公園緑地등 生活用地의 1人当 需要面積도 크게 증가되며 既存市街地와 인접돼 있는 郊外의 土地도 市街地에로의 圧力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25)

都市地域에서 土地需要의 이러한 팽창은 첫째, 市街地의 平面的拡大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都市 內部의 많은 農耕地의 林野의 蚕食을 초래할 것이며 開発 및 管理의 費用이 많이드는 傾斜地, 低 地등의 利用과 既存 市街地의 再開発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住宅地는 郊外地域으로 拡 散되게 되고 工業用地도 都心地에서 外廓地帯로 立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 農村地域은 家族計劃에 의한 人口의 自然增加率 鈍化 및 都市地域으로의 人口流出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구의 절대수 減少現象이 나타나는 곳이 적지않아 26) 住居用土地의 需要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 伝統的인 聚落形態에 根本的인 修正이 가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都市內部의 土地利用은 集約性과 高度化가 이루어질 것이며 既存의 土地利用 結合方式으로는 장차의 모든 欲求를 充足할 수 없기 때문에 用途別 地域制의 専用化,空地地区의 設定등 새로운 土地利用 結合方式이 대투될 것이다. 27)

2) 農耕地

현재의 農耕地面積은 都市計劃区域 내부의 것까지 包含하고 있는 것인데 都市化現象에 따라 이 区域의 농경지는 많은 면적이 非農業用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中山間에서의 농경지 개간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耕地整理등 농업기반의 整備強化로 농경지 이용에 고도화가 이루어져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作物의 選択的栽培 현상이 확대될 것이다。

이에따라 主穀의 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특용 및 経済作物栽培가 크게 증가될 것이며

²⁵⁾ 崔相哲, 前揭論文, p.15.

²⁶⁾ 済州道内의 176개 村落가운데 1969-1974年 사이에 人口가 줄어든 곳은 44.3 % 인 78 個 村落이며 그 중에서도 安德面과 韓京面地域이 더욱 심한 減少現象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吳洪哲, 村落의 実態와 再編成方案。開発過程에서 派生되는 地域問題의 実態와 그 対策, 韓国地理研究所 主催 学術심포지움主題論文, 1976 年 12 月, pp.24-25 参照。

²⁷⁾ 崔相哲, 前揭論文, pp.18-19.

그중에서도 감귤재배면적이 가장 확대될 것이다。 作物栽培技術의 향상과 교통수단의 발달, 저장수단의 改善등으로 高等園芸는 전형적인 都市周辺 近郊農業 일변도의 형태에서 탈피, 보다 자연적 조건이 적합한 곳에서 栽培되는 遠郊農業의 형태로도 적지않게 전화될 것이다。

3) 山林地

相対林地는 耕作地 및 牧場用地로의 사용등 他目的 利用転換의 대상지가 되어 절대면적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絶対林地는 水資源 衝養, 에너지 및 公害의 防止源으로서 自然保護的인 銀点에서 保全策이 강구될 것이다。

木材의 供給地로서 林木書積量의 중대를 위한 造林이 이루어지고 経済性에 입자한 樹種更新事業,採種林事業도 활발히 추진되며 山地가 지니고 있는 観光資源도 積極的으로 開発되어 질 것이다.

4) 餘暇地

餘暇地는 그 特性에 따라 크게 水辺餘暇空間,山林餘暇空間,文化的 또는 歷史的 餘暇空間의 세가지 類型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앞으로 道民의 所得增大의 観光客의 급증에 따라 観光・위 락등을 위한 각종 시설확충의 필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餘暇地의 需要를 크게 增大시킬 것이다。

한편 餘暇地에 대한 質的인 변화도 이루어져 餘暇時間 活用에 있어서 自然景観 자체보다 人工的 施設為主의 積極的 餘暇活用이 나타날 것이며 餘暇時間 증대로 개인적 趣向이 다양화해집에 따라 각종 스포츠施設을 위한 用地需要가 급격히 증대될 것이다.

또한 公共住宅과 都市的 土地利用이 高度化됨에 따라 共同的인 空間도 상대적으로 增加될 것이다. ²⁸)

5) 工業地

工業의 立地는 原料,動力,勞動力,用水,交通등의 조건에 좌우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済州 道의 与件上 重化学工業은 발달이 힘들 것으로 展望되나 道内의 主産物을 原料로 하는 軽工業은 앞으로 伸張될 것이 확실하므로 工業用地도 어느 정도의 확대가 불가피함 것이다。

오늘날 工業生産패턴의 일반적인 추이는 점점 土地를 많이 所要하려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애따라 工場을 새로히 짓거나 都心地의 既存工場을 都市 주변으로 이전할 경우 많은 用地를 필요로 하며 駐車場, 倉庫, 野積場등 부수시설에 쓰일 면적도 크게 增加될 것이다.

²⁸⁾ 崔相哲,前揭論文, pp.18-19.

VI. 濟州道開發을 위한 合理的인 土地利用政策

비록 같은 国家內라고 해도 토지에 관한 当面与件은 地域別로 크게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地域別 土地利用政策은 그 지역의 社会・経済的 여전 및 機能, 그리고 特性에 부합되게끔 세워져야 合理的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地域別 土地利用政策이 全的으로 独自的이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디까지나 上位計劃인 因土綜合開発計劃上의 国土利用政策의 테두리 안에서 地域与件을 고려하고 세워져야 한다는 現実的인 限界가 뒤따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土地利用政策을 類型別로 보면 ① 住宅用地。産業用地의 지정 등 土地의 適正利用의 指導。② 과도한 集中開発의 阻止등 土地의 잘못된 利用의 制限。③ 開発 回避의 制止등 土地의 不使用。放棄의 規制。④ 都市再開発등 土地再利用의 指導。 ⑤ 山地開墾埋立등 土地利用面積의 확장。⑥ 社会的 副作用의 最低化물 위한 環境保全등으로 大別할 수가 있겠다。

済州道는 国土綜合開発計劃上 観光을 중추기능으로 하고 작중 산업을 観光과 연계시켜 地域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方向으로의 開発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済州地域의 効果的인 開発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地域보다도 土地의 利用과 保全이라는 両面이 關和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의 土地政策이 모색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볼 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든다면 ① 생산성향상을 위한 土地利用面積의 확대 ② 環境의 質的向上을 위한 利用規制의 強化 ③ 土地의 積極的 利用의 誘導・促進 ④ 開発의 戦略的 拠点을 마련하기 위한 国公有地의 확보가 아닌가 보아진다。

1. 土地利用 面積의 擴大

1) 中山間地域의 開墾

済州道의 土地利用面積 확대를 위한 가장 큰 潜在力을 가진 곳이 바로 中山間地域이다。中山間 은 해발 200~600 m에 橢円状으로 分布된 5만 7천여 ha의 광활한 地域으로 済州道 総面積의 28%에 이르는 極斜 5°~15°의 용암대지이다。

이곳은 예전부터 農耕地로 이용되었으나 1917년 済州道에 海岸一週道路가 개설되어 中山間部 落이 쇠퇴하면서 버려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1948년 4·3 景動에 의한 中山間部落의 集団疎開로 황폐화의 길을 재촉했다。 그후 이곳은 주로 放牧地로 이용되었고 1960년대 부터는 開発부음을

타고 일부면적에 대한 再開墾이 이루어 졌으나 아직도 相当 面積이 遊休状態로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自然的要因과 社会 経済的 要因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때문이다.

自然的要因으로는 中山間이 ① 低温, 日照不足, 強風, 積雪등으로 気象条件이 나쁘며, ② 強酸 性,表土不足,深土不足등에 기인하는 土壤不良,③ 用水欠乏등 水利条件이 不利한 点등을 들 수 있으며 社会 経済的 要因으로는 土地利用을 위한 기반시설의 결여, 개간에 소요되는 資金 및 資 材不足등을 지적함 수 있다。29)

中山間 地域에 開墾可能地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分析이 필요하겠지만 済州道当局의 推計로는 2만여 ha로 나타나고 있다.

즉 済州道가 해발 200 ~ 800 m 의 토지 81,154 ha 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이중 34,920 ha 는 이미 개간이 되어있고 未活用地는 46,233 ha 인데 이중 25,045 ha 는 開墾不能地 이나 나머지 21,888 ha는 開墾可能地로 나타나고 있다. 〈表 10 参照〉

く表 10 > 中山間 開発可能 面積

所有人員

総面積

(1978.12.31. 現在) 단위 : ha

発 面 開発不能地 開発可能地 12,515 2,420

鱪 未

計

48,034 20,409 27,625 道内人 46,601 15,110 道外人 525 9.098 4.274 4.824 2.404 玉 有 6,906 4.010 2,896 559 2,337 市郡有 9.103 3,293 5.810 1.381 4,429 3,344 部落共同 90 8,012 2,934 5,078 1,734 # 46,296 81.154 34.920 46.233 21,188 25,045

既開発面積

※ 資料: 済州道

土地所有別

이러한 開墾可能地長 所有形態別로 보면 済州道内人 所有가 15,110 ha,道外人所有 2,404 ha, 国有地 559 ha, 市・郡有地 1,381 ha, 部落共同所有 1,734 ha 로 個人所有가 オ제의 83 % ql 17,514 ha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行政当局은 国公有地의 개간에 노력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民間人들이 개가사업에의 積極参与를 誘導하기 위해서는 中山間 既存道路網의 정비, 새로운 道路의 건설등으로 基盤을 확 충시켜 주고 中山間의 既存部落을 計劃化함으로써 開発의 「戦略的拠点」을 마련해 주어야 할 必 要가 있다。 또 中山間의 土地에 대한 精密調査를 실시하여 세밀한 土地利用計劃을 세우고 개간

²⁹⁾ 강경선, 中山間開発을 위한 나의 提言(I),제주도,通券第49号, 1971, p.73.

참여자에게 行政支援을 해주는 등 政策的인 배려가 要望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이렇게 개간된 土地를 어떤 目的에 利用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개간된 山地의 利用形態는 ① 糧穀生産,② 桑田造成,③果木植栽,④ 牧畜用地,⑤ 燃料林 및 用材林造成。⑥ 観光資源開発등 크게 6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30)

이러한 利用形態는 地形, 土壤, 気候, 植生 등 자연적인 여건과 地域別 社会・経済的인 特性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지만 済州道의 경우 中山間開発은 주로 목야개간의 性格을 띠고 있으므로 그 用途는 일반작물재배 및 改良草地造成에 主眼点을 두고 이를 観光과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 직한 방향이라고 보아진다。

2) 市街地内 空閑地의 活用

都市地域에 있어서 市街地의 平面拡散을 방지하면서도 土地利用面積을 확대시킬 수 있는 方案 의 하나는 空閑地를 생산적인 用途로 積極 活用하는 일이다.

現在 済州道의 都市計劃区域內에 散在한 空閑地가 얼마나 되는지는 資料가 없어 정확하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수백 ha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空閉地는 土地区劃整理事業을 통해 民間에게 払下된 것도 있고 원래부터 民間人 所有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수년이상 放置되어 遊休化状態로 投機対象이 되고있어 土地利用度 提高에 莫大한 지장을 주고 있다。

自由中国의 土地政策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都市地域內의 未利用地에 대한 所有制限이다。 즉 市政府는 農地量 除外하고 建築物이 건설되어 있지 아니한 都市內의 토지의 最高所有面積 - 1000 교 - 을 정할 수 있고, 이들 土地所有者에 대하여 2년이내에 建築物의 건설을 命할 수 있으며 이 期間을 넘어도 建設하지 않을 때에는 当局은 이를 収用할 수가 있다.31)

이러한 法制度는 都市의 空閑地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같은 法体系가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間接的으로 規制하고 있는 空閑地稅라는 制度도 낮은 稅率, 非現実的인 課標, 그리고 2백평이상이라는 관용적처사로 말미암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空閑地를 생산적인 용도에 積極 活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효적절한 法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土地의 利用面積拡大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都市計劃事業에 의하여 도로 망을 개설할 때 道路辺에 버려진 소위 〈조각空地〉를 어떻게 活用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현재 済州市의 경우만 해도 조각空地는 무려 5,114 필지에 이르고 있으며 32) 기타의 都市計劃

³⁰⁾ 강경선, 前掲論文, p.66参照.

³¹⁾ 自由中国 実施都市平均地権条令 第52条参照。

³²⁾ 済州新聞, 1979年11月10日字第7面参照。

地域에도 상당 면적에 이를 것으로 推定되는데 이들 空地는 建築法施行令上의 建築基準面積에 미달되어 活用을 못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조각 空地는 그 所有者에게 財産上의 피해를 주고 있는데다 都市美観까지 크게 해치고 있으므로 土地의 交換 및 分合등 行政上의 施策을 통한 活用方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3) 農耕地内 墳墓의 軽理

済州道에 있어서 農耕地內의 墳墓는 예로부터 農業生産性을 크게 沮害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済州道는 이러한 문제점을 解消시키기 위하여 1972년에 農耕地拡張 10個年計劃을 마련,農耕地內 墳墓의 정리를 중점사업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集団公設墓地,公園墓地,無縁共同墓地등 작중 墓地를 조성하고 그동안 農耕地內의無縁墳墓 2萬5千墓를 이곳으로 옮겨 実耕地 150 ha 를 확장하는 한편 住民들에게도 墓地에로 埋葬이나 移葬을 誘導하는 施策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農耕地에는 아직도 10萬墓의 有縁墳墓가 소재한 채 660 ha 의 면적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済州道는 몇해전부터 이러한 有縁墳墓까지 整理할 방침아래 移葬을 命할 수 있는 法的 뒷받침을 얻기위해 特別法의 制定이나 既存法令의 改正을 해주도록 政府에 전의해 왔는데 「特定地域 綜合 開発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1978年 定期国会를 통과함으로써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法은 墳墓등의 整理에 관한 規定을 두어 ① 道知事는 開発事業에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開発促進地区內의 墳墓등과 이에 부수되는 施設에 대해서 移葬이나 移転을 命할 수 있으며 ② 縁 故者가 만일 이 命令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市長・郡守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해 代執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³³)

이에따라 農耕地內의 墳墓는 縁故者가 있고 비록 合法的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해도 필요할 경우는 移転을 명할 수 있어 農耕地拡張과 그에 따른 土地利用度提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다.

그런데 済州道民들의 伝統的意識은 祖上의 墳墓와 崇祖精神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傾向이 강하다. 따라서 농경지내의 有縁墳墓는 公権力을 発動한 強制移葬을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説得에의해 自進移葬을 유도하는 行政上 運営의 妙를 살리는 방안이 바랍직하다고 여겨진다.

2。土地利用 規制의 強化

1) 開発許可制度의 活用

³³⁾ 特定地域 綜合開発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 第40条参照。

開発許可制度는 土地利用行為를 좀 더 公権力의 主導아래 規制하려는 目的에서 나온 것으로 特定地域内의 土地의 開発 및 利用行為를 開発計劃에 따라서 許可를 받도록 하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현재 英国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再開発地区나 都市開発 豫定区域등 부분적으로는 計劃的인 地域開発을 위한 許可量 市長・郡守로 부터 받게 하고는 있으나 全国의 모든 土地가 英国의 경우와 같이 開発許可 制度에 의해 規制되고 있지는 않는데 ³⁴⁾ 이 制度의 적극적인 活用도 土地의 利用을 純化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制度는 그 施行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内在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都市 및 農村地域에 걸쳐 開発許可의 기준이 될 開発計劃이 수립되지 않아저는 안되며, 그것도 自然的与件 및 社会・経済的実情을 고려해서 아주 細密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英国에서도 1947年부터 全国에 결친 開発許可制度가 실시되었으나 처음에는 대부분의 地域이 여러해 동안 開発計劃을 세우지 못해 地方政府가 開発許可를 하려고 해도 그에 필요한 基準이 없었기 때문에 施行過程에서 큰 効果를 거두지 못했던 事実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 制度는 우리나라와 같이 政府나 地方自治団体가 開発事業을 主導하여 많은 地域에 開発与件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크게 有用한 制度이며 특히 公共事業에 대한 投資로 급격한 부움을 일으키는 地域에서는 投機的 土地去来의 폐단을 억제할 수 있는 制度的인 装置로서도 필요할 것 같다. 35)

더구나 済州道는 地域의 절대면적이 협소한데다 国土綜合開発計劃에 따른 圏域計劃인 観光綜合 開発計劃을 추진하고 있으며 国土利用管理法에 의한 用途地域과 用途地区도 지정되고 있으므로 地域이나 地区別로 細密한 開発計劃을 수립하는 것이 비교적 容易하다.

따라서 済州道의 경우 土地利用規制 強化方案으로서의 開発許可制度의 活用은 全国의 다른 어느 地域보다도 施行上의 難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 環境影響評価制度의 導入

경제개발과 都市化現象으로 파생되는 自然環境의 문제는 크게 ① 自然資源의 고간 ② 自然環境의 野染 ③ 自然景観의 파괴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자원의 고갈은 工業生産의 過度化에 따른 原料採取에 의해 結果되고, 자연환경의 汚染은

³⁴⁾ 權家後,周土開発斗 土地政策의 基本方向,우리나라 国土計劃斗 土地利用 및 土地金融政策,韓国国土 計劃学会 主催 세미나資料,1979年8月, p.48。

³⁵⁾ 梅寒後, 前揭論文, p.50.

生産 및 居住体系로 부터의 廃棄物의 放出에서 일어나며, 자연경관의 파괴는 経済性為主의 開発 行為와 節度없는 위탁행위로 부터 発生한다.³⁶⁾

이중 済州道의 土地利用問題와 특히 관련되는 것으로는 景観의 파괴를 들 수 있는데 1960년대 초반부터 推進되어온 経済第一主義는 開発過程에서 自然을 필요이상으로 파괴시켜 놓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開発은 自然保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方法이 강구되어야 하고 파괴된 自然은 될 수 있는한 原状回復을 指向하는 方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観点에서 環境保全등 土地利用의 合理化를 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規制方案의 하나로 環境影響評価制度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制度는 開発計劃의 樹立이나 開発事業의 실시에 있어서 事業者에게 그 사업이 실시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事前에 考慮하고 이를 調査할 義務를 부과시키는 것이다. 이 制度는 美国이나 日本의 最近의 開発法制에 規定됨으로써 환경보전행정의 추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37)

이러한 制度가 우리에게도 導入된다면 開発事業者는 그 事業의 추진에 慎重과 自制를 기하게 되고 환경악화의 영향이 가장 적은 開発手段을 選定하게 됨으로써 結果的으로 自然景観의 파괴나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38)

3. 土地利用의 誘導・促進

1) 地域別 基盤施設의 整備

済州道 全域에는 国土利用管理法에 따라 用途地域 地区가 指定되어 있다. 그러나 이 制度는 어떠한 地域 또는 地区에서는 어떤 利用行為를 할 수 없다고 規制하고 있을 뿐이고 어떤 利用行為를 하여야 한다고 規定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 므로 이 制度는 장래에 대한 土地利用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提高시키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주로 効率性의 저하를 소극적으로 除去하는 現状維持的 機能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느 한 地域을 具体的인 開発計劃에 따라서 開発하고자 하는 경우, 用途地域制는 強力한 手段이 되지 못하므로 그 地域의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인 土地利用을 할 수 있게금 誘導・促進시키는 새로운 手段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 방안의 하나가 用途地域의 실정에 알맞는 基盤施設을 정비해 주는 일이다.

国土利用管理法은 用途地域이나 地区로 지정되면 国民에게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土地利用을 하

³⁶⁾ 金安済,環境平 国土,博英社, 1979, p. 48.

³⁷⁾ 日本環境庁, 環境白書 --- 昭和 50 年代の 環境行政 -- 1975, p. 114 以下参照,

³⁸⁾ 徐元宇,環境保全斗 土地利用規制, 法斗 環境, 三英社, 1977, p. 39 参照。

도록 義務를 부과하면서도 国家가 그의 適合한 利用을 誘導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規定도 없다.

土地利用計劃에 의한 効率的인 土地利用은 이러한 消極的인 制限만으로는 이루어 질수 없으며 指定用途에 적합하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所有者들에게 유리하게끔 해 주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가 用途地域別로 土地利用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제반 基盤施設을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 즉 土地를 정하여진 用途이외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国民에게 부과된 義務라고 한다면 土地利用의 誘導를 위해 国家나 地方自治団体에 과하여지는 의무는 公共投資量 중점적이며 計劃的으로 하여 각 用途地域에 적합한 施設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39)

예를 든다면 工業地域에서는 輸送施設,電化施設,工業用水施設이,農業地域에서는 農路,農業 用水施設이 정비되었을 때 用途에 적합한 土地利用이 誘導되고 결과적으로 利用度가 提高될 수 있다.

2) 開発義務의 制度化

開発義務를 制度化하는 것도 토지의 合理的利用을 誘導促進시키는 강력한 방안의 하나이다. 이制度는 계획적 토지이용의 增進을 위하여 特定土地의 利用이나 開発을 특히 促進시킬 필요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 一定期間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開発을 命令하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実定法上 遊休土地에 대한 조치의 形式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日本의 国土利用計劃法은 一定規模 이상의 遊休土地에 대해서는 開発이나 利用計劃의 작성을 土地所有者에게 命할 수있도록 되어있고 40) 우리나라의 国土利用管理法도 1978년 12월 改正時에 第2章의 2 (土地去来등의 規制등)를 신설하여 日本과 거의 같은 內容의 開発義務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그 內容을 보면 ① 土地利用計劃, 都市計劃, 기타 土地의 利用에 관한 計劃上 그 土地나 그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있어서 計劃的인 土地의 增進을 위하여 当該土地의 利用이나 開発을 특히 促進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한 面積이상의 토지, ③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에 供하고 있지 아니한 土地에는 遊休地의 通知를 할 수 있다. 41)

일단 遊休地 通知를 받은 土地所有者는 3개월이내에 当該土地의 開発과 利用計劃書통 작성하여 道知事에게 提出하여야 하는데 道知事는 그들에게 유효적절한 開発이나 利用의 促進에 관한 必要한 助言을 행할 수 있으며 그 計劃이 土地利用計劃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획의

³⁹⁾ 宫沢弘, 新国土計劃論, 有變閣, 1968, p.18.

⁴⁰⁾ 日本国土利用計劃法 第6章参照。

⁴¹⁾ 国土利用管理法 第21条의 10 参照。

변경을 권교할 수가 있다. 4)

이미 考察한 用途地域制가 토지이용을 規制하는 가장 一般的인 手段이라면 遊休地에 대한 開発 義務의 制度化는 반대로 土地利用을 誘導促進하기 위한 가장 代表的인 手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済州道內의 土地에 대한 이 制度의 적극적인 活用은 보다 合理的이며 効率的인 土地利用 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制度 역시 開発許可制度의 경우와 같이 当該土地가 소재해 있는 地域이나 地区全体에 未来를 내다 볼 수 있는 合理的이며 신뢰할만한 細密한 開発計劃이 세워져 있어야 보다 큰 成果를 거둘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土地利用의 실태를 科学的 客観的으로 把握할 수 있는 정밀한 土地調査事業을 하루빨리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⁴³⁾

開発義務化制度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을 開発을 命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의 自力만으로는 開発이 困難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이다. 国土利用管理法은 遊休地에 대한 開発·利用計劃 書号 期限内에 제출하지 않거나 道知事의 계획변경권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当該土地에 대해 買収協議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計劃書号 提出하고도 指定期限内에 개발에 착수하지못 하거나 事業을 完了하지 못하였음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規定은 없다.

따라서 이 때에는 買収協議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기 보다는 事業施行者를 지정해 주어 土地 所有者와 共同으로 開発에 참여시키는 것이 私権保護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믿어진 다.

4. 公有地의 確保

土地利用規制의 効率性과 土地所有權은 깊은 関係量 가지고 있다. 国家나 地方自治団体는 그들이 所有하고 있는 土地에 대해서는 法律이 정하는 법위안에서는 完全한 利用統制를 할 수 있기 때문에 国公有地가 많으면 많을수록 利用의 促進 내지는 規制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自由主義国家中 英国이나 北欧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公共所有權이 일반 적인 土地政策手段으로서 크게 活用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原因은 国公有地의 取得이 대체로 우연한 제기로 이루어졌던 데 있는 것 같다.

즉 国家나 地方自治団体가 土地를 所有하게 된 動機가 적극적인 開発指導의 必要性에서라기 보다는 民間人들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아래 내버린 토지나 外国의 植民地에서 独立하면서

⁴²⁾ 国土利用管理法 第21条의11参照,

⁴³⁾ 徐元字,国土利用斗 土地問題,国会報, 1978 年 11 月 · 12 月 合併号,大韓民国国会事惠処, p.57。

물수한 帰属財産의 취득에 起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는 国公有地의 관리는 善良한 管理者로서의 義務만 다하면 充分한 것이라고 여기고 적극적인 利用 開発의 대상물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은데 있었다.44)

우리나라도 解放後 帰属財産 및 旧皇室財産의 国庫転入으로 国公有地의 比重이 높은 편이었으나 무계획적인 売却処分으로 1950년대 後半부터는 크게 減少되었는데다 남아있는 것 마저도 제대로 活用이 안돼 自然資源의 保全手段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国公有地의 매각은 政府나 地方自治団体의 稅収를 충당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公共施設用地에 대한 需要의 急增으로 싼 값으로 이미 매각해버린 国公有地量 비싼 값으로 다시 사들여야하는 어려움을 야기시켰고 開発投資에 있어서 土地買入에 소요되는 비용의 比重을 급격히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現象은 済州道의 경우라고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記録이 없어 확실한 것은 알수 없지만 解放直後에는 광대한 면적의 公有地가 있었으나 民間払下로 크게 줄어들어 현재는 12,746 ha 만이 남아 있다. 〈表 11 参照〉

く表	11	>
----	----	---

済州道内 公有地実態

(1979.12.31 現在)

단위 :ha

X	分	B†	垈 地	農耕地	林 野	其 他
	#t	12,746.92	55.92	70.12	12,011.13	609.75
道	有 地	366.22	16.56	4.69	322.31	22.66
市	小 計	12,380,69	39.36	64.42	116.88	587.08
•	済州市	1,097.04	19.73	43.70	783.01	250.59
郡有地	北済州郡	6,703.21	11.20	9.68	6,506.70	175.62
地	南済州郡	4,580.43	8.42	12.04	4,399.10	160.87

※ 資料: 済州道

이는 済州道面積의 7%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垈地가 0.5%, 農耕地도 0.5%, 雜種地는 4.8%일 뿐이고 나머지 94.2%는 林野面積이며 그나마 未林木地가 40%인 4,879 ha 나 되어 効用価値가 그리 크지 못하다.

経済開発과 都市化現象이 深化되면 될수록 公共用地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展望되는데 公 有地가 이에 利用될 수 있다면 公共投資에 있어서의 土地買入費用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고 결과

⁴⁴⁾ 檔案後,国土開発의 効率化量 위한 土地政策,都市問題, 1976年8月号,大韓地方行政共済会, p.54。

적으로는 土地利用의 合理化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現在의 国公有地는 무계획적인 売却을 당연히 止揚해서 이를 적극 活用해야 하며 亡失 되었거나 隱匿된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公有地는 예전부터 管理不実로 상당면적이 망 실되었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한편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스웨덴, 덴마크등 北欧諸国의 경우와 같이 장래 開発의 〈決定的 通路〉에 해당하는 地域은 財政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地方自治団体가 이를 買入하고 公有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英国에서도 1976 년부터 「開発用地公有化法」이 ⁴⁵⁾ 시행되고 있다. 이 法은 土地開発의 이니 시어티브를 地方公共団体의 손으로 옮기기 위하여 開発에 적합한 土地를 地方公共団体 또는 公共機関의 소유로 옮기는 것을 目的으로 制定되었는데 主務長官의 指定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고 있다.

開発을 위한 〈決定的 通路〉의 확보는 投機現象으로 地価가 계속 앙등되고 있는 済州道의 경우에는 現在와 将来의 土地市場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될 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 〈決定的 通路〉를 중심으로한 더 넓은 지역의 土地의 利用과 開発을 유도・촉진시키는 手段이 될 것 ⁴⁶⁾도 틀림 없다고 하겠다.

특히 済州道의 경우는 中山間地域에 이러한 通路로서의 戦略的인 拠点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로 판단된다.

VII. 結 論

以上에서 済州道開発에 있어서 土地問題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며 開発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土地政策이 필요한지를 利用政策的인 側面에서 고찰했다.

현재 施行되고 있는 済州道綜合開発事業은 観光을 主軸으로 하고 餘他産業을 여기에 聯関시켜 長期的인 眼目에서 済州道全域에 결친 開発秩序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合理的인 土地利用政策의 뒷받침을 그 기본적인 前提로 삼고 있다.

따라서 済州道綜合開発事業을 효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土地의 利用을 所有者의 恣意에 일임해서는 결코 안되며 公共機関이 公権力을 개입하여 일정한 計劃아래 土地의 特性에 따라 社

⁴⁵⁾ 英国의 「開発用地公有化法」의 正式名称은 「地方公共団體 및 其他 一定한 機関에 대하여 開発을 위한 적절한 用地를 取得・管理・去来케 하며 아울리 開発用地의 公的所有를 위해, 그리고 그 公的所有에 관련된 기타 필요한 規定을 정하며, 土地計劃法을 改正하며, 또한 土地補償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土地強制取得을 위한 土地価格의 評価要耦을 改正하고 未利用 事務所用建築敷地에 관련된 規定을 정하며 아울리 웨일즈開発用地公団을 設置하기 위한 法律」이다.

⁴⁶⁾ 権泰坡、前揭論文, pp. 54-55 参照。

会·経済的目的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利用·管理할 수 있는 制度的,物動的인 対策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

이러한 対策에는 여러가지 方案이 있겠으나 済州道의 土地利用 実態 및 問題点을 감안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는 ① 中山間開発,都心地內의 空閉地活用,農耕地內의 墳墓整理등에 의한 土地利用面積의 확대 ② 開発義務化制度의 活用,用途地域 및 地区別 기반시설의整備를 통한 적극적인 土地利用의 誘導・促進 ③ 開発의 戦略的인 拠点을 마련하기 위한 公有地의 확보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合理的인 土地利用政策은 이러한 土地의 적극적 개발이나 高度利用을 기하기 위한 方案 만이 아니라 人間生活의 質的向上에 대한 考慮가 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아서는 안된다. 게다가 済州道開発은 観光的인 側面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쾌적한 生活環境의 造成,自然環境의 保全에 보다 적극성을 떠울 수 있는 開発許可制,環境影響評価制등의 導入도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같이 土地利用政策은 済州道의 自然的 与件 및 社会・経済的実情에 적합하게끔 土地資源의 開発과 保全이 相互調和를 이를 수 있는 바탕위에서 수립될 때보다 合理的인 것이 될수있으며 結果的으로는 済州道의 綜合開発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看過해서 안 될 점은 이러한 土地利用政策의 내용가운데 開発義務制度,填墓整理,開発許可制등은 그 施行過程에서 必然的으로 土地所有者의 所有権行使에 많은 制約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土地財産権은 그 物的特殊性 때문에 다른 財産権보다 더 많은 社会的인 制約을 받고있고 利用規制의 範囲도 넓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制約은 国土의 綜合的이며 効率的인 利用을 통하여 空間秩序을 신숙히 확립하고 社会・経済의 均衡있는 발전으로 福祉社会 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措置이기는 하다.

그러나 土地財産権은 資本主義社会에서 個人의 自律的이며 責任있는 生活을 전개하기 위한 経済的인 基礎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無限大한 規制는 있을 수가 없고 公法上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 처약하며 ⁴⁷⁾ 그 規制는 당연히 衡平性의 原則에 따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土地政策에 있어서 가장 크게 批判의 対象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土地의 利用내지 開発과 관련된 引動告示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利益을 보는 者의 損失을 보는 者間에 발생하는 不均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政府는 地域 및 地区別 土地利用計劃에 따른 利害得失을 적절히 고려하고 開発効果의 파급에 따라 地価가 앙등되는 곳에서는 租税 및 負担金의 형식으로 不労所得을 환수하여 土地利用計劃의 告示로 말미암아 開発損失을 당한 土地所有者에게 補償을 해 주는 方法도 講究되어져야

⁴⁷⁾ 憲法 第20条3項, 第116条1項参照。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公権力의 작용에 의한 損益의 不均衡을 최소한도로 줄임으로써 社会的衡平性을 유지할 수 있게되고 나아가서는 土地利用의 合理化를 기하는데도 間接的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 論文은 財団法人 織山社会福祉事業財団으로 부터 研究費을 補助받아 作成한 것임.

- Summary -

The Development of Jeju-do and Its Policy of Land Utilization

Boo, Man Keun

In this essay, two basic problems are discussed from the land utilization point of view: 1) why the problems of land utilization acquire great importance in the development of Jeju-do. 2) what land policy is required for successful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Jeju-do must be based on a rational policy of land utiliz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carry out the development works, the policy must be established in due consideration of the social, economic, and natural characteristics of Jeju, and the standpoint of mutual harmony between exploitation and conservation.

Considering what is discussed above, it can be thought that the contents of a rational policy for land utilization of Jeju-do area the following: 1) enlarging the area of utilization by exploiting the mountain districts around Mt. Halla. 2) promoting and encouraging the positive utilization of the land by institutionalizing the obligatory development. 3) strengthening the purification of land exploitation by establishing a license system. 4) making an endeavor to secure public land for strategic strongholds of development. However, what we cannot overlook that in the course of putting such a policy in force, the enforcement may put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dominium.

It is true that nowadays the particularity of land property rights is expanding the range of its limitation more widely than any others. But land forms the economic foundation of individual basic life in a capitalistic society. Accordingly, limitless restrictions cannot be accepted in any case; they must be minimized even when the restriction is required from the standpoint of public law; if any, they must be impos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quilibrium.

One of the controvertial points in our nation's land policy is the disharmony between the people who gain unjust enrichment and the ones who lose their just rights through the enforcement of it. Therefore, the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and take measures to collect unjust enrichment and to indemnify losses. That is thought to be one of the devices to minimize the unharmoniousness, which is caused by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and to maintain social harmony.

It is believed that it is not until the land utilization policy of Jeju-do Province is established, based on the harmony between exploitation and conservation and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equilibrium, that the overall development of Jeju-do can be achieved successfully.